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1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·박 정·김홍걸

최혜영 · 유정주 ·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· 서영교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시설 및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8호).

법률 제 호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	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수립 등) ①
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
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6조	
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	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	
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
	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
	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